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84호 2020. 1. 6(수)

거창살기좋은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6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공 고

제2020-1679호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4
제2021-1호「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2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12
제2021-23호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 13
제2021-27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24
제2021-28호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 ····· 25
제2021-31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에 따른 행정예고 ····· 30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8길 19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51-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8길 19	20090401	20210106	거창읍 동남녘 한들에 위치한 행정구역 대평리를 반영한 여덟번째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46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마항길 68	20090401	20210106	북상면 농산리와 위천면 강천리 사이의 말목고개 아래 자리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농산길 4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농산길 41	20090401	20210106	400여 년 전에 창녕 성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하는 원농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여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0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치내길 50-41	20090401	20210106	갈계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부여

거창군 공고 제 2020 - 1679호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거창군 4차, 20수용1473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함양 ~ 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거창군4차, 20수용1473호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2. 31. ∽ 2021. 1. 15.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055-940-355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동리 233-2번지 총 19필지(8,675㎡)
6.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 경남 거창군 가지리 566, 이선석 등 15명
7. 이해관계인
   - 경남 거창군 중앙로 103, 거창군 등 2명
8. **열람공고기간 이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1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2. 개정이유

○ 2019년 공무원 단체협약(체결 : 2020.12.30.)에 따라 당직근무자 휴일 지정

○ 농업기술센터, 거창읍의 당직근무(숙직)를 개선하여 근무의 실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휴무부여 확대(안 제5조)

-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휴무

⇒ **일직·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휴무**

나.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변경(안 별표)

- 농업기술센터 숙직근무 변경

· 평일 : 숙직(18시~다음날 09시) ⇒ **숙직(18시~22시)근무 후 재택당직**

· 휴일 : 숙직(18시~다음날 09시) ⇒ **일직 근무 후 재택당직**

- 거창읍 휴일 숙직근무 변경

· 숙직(18시~22시)근무 후 재택당직 ⇒ **일직근무 후 숙직 재택근무**

4. 예고기간 : 2021. 1. 4.(월) ~ 1. 11.(월)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9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sykim691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조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업무상”을 “군수는 업무상”으로 “휴무”를 “휴무하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숙직근무” 를 “일직·숙직 근무”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운전원, 청소부”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하루를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하루를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③ (생 략)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숙 직		일 직
본청	당직사령	6급 1명		5급~6급 1명
	당직원	7급 이하 2명		7급 이하 2명
농업기술센터		**평일**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1명
		휴일	**재택당직**	
보건소		재택당직		1명
수도사업소		1명		1명
정수장		청원경찰 포함 1명		청원경찰 포함 1명
체육시설사업소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1명
거창사건사업소		재택당직		1명
청소년수련관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1명
한마음도서관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1명
거창박물관		재택당직		1명
수승대관리사무소		1명		1명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재택당직		1명
거창창포원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1명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재택당직		1명
거창읍		**평일**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1명
		휴일	**재택당직**	
면사무소		재택당직		1명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 2021 - 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고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5. ~ 2021. 1. 22.
3. 공고대상 : 50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1월 5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1-23호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1. 5.

거 창 군 수

1.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제39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 지원대상

❍ **저녹스보일러**(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로 교체하려는(한) 자**
(신축주택 등 보일러 신규 설치는 제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인증현황 확인 : el.keiti.re.kr)

※ 지원 제외대상

- 당해연도 이전에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한 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공동주택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물량 : 일반가정 28대, 저소득층 : 24대

*지원수량은 일반가정과 저소득층 신청 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보조금 신청

가. 보조금 신청 절차

❍ **(사전신청)**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인 경우 : 공급자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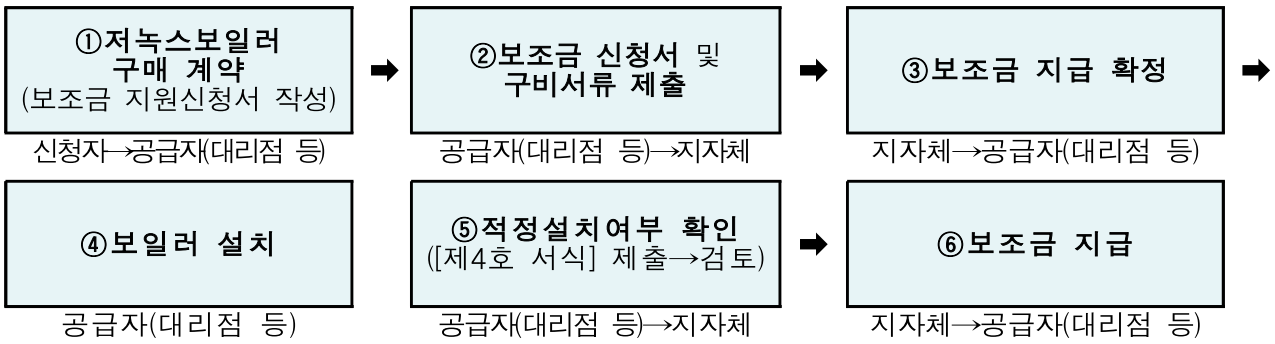

❍ **(사후신청)** 보일러를 이미 교체한 경우 : 공급자 또는 구매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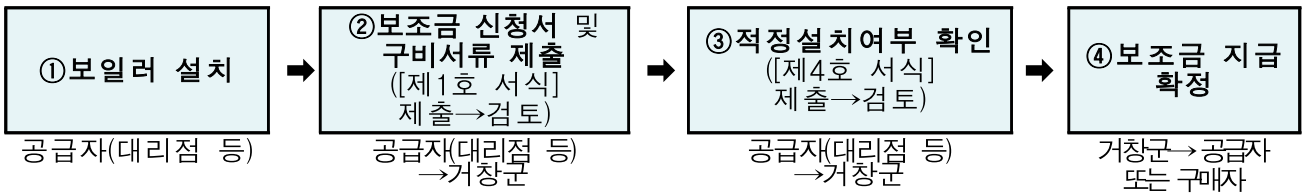

나.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 5. (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또는 설치업체)를 통해 신청**

· 공고일 이전에 설치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접수처 : 거창군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940-3493)

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전·월세 계약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소득층 증명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별첨1]
- 계약이행 증빙서류 [별첨2]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라. 대상자 선정

❍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

마. 보조금 지급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6. 유의사항

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공급자에게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② 공급자는 구매자와 계약 체결 시 보조금 및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

③ 저녹스 보일러 설치 전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득이하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연사유 및 설치계획을 제출)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금지

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문의처 : 거창군청 환경과(☎ 940-3493, 저녹스 보일러 담당자)

[제1호 서식]

접수	2021-　　호 (2021.　.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지급요청금액		□ 2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①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③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④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⑤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9호 서식)시 생략 가능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거창군수 귀하

[제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제 작 사 :	○판 매 사 :
○모 델 명 :	○보일러용량 : Kcal/hr
○제조번호(S/N)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1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별지 작성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별첨1]

저녹스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보일러 모델명과 제조번호를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시공중인 현장 사진 -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 **반드시 `21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 시공자 -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별첨2]

저녹스보일러 설치 계약이행 증빙서류

1. 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빙	2. 보조금 부분에 대한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첨부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상의 공급자와 구매영수증의 공급자가 반드시 일치해야함.

☑ 공급자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요청하는 경우

1. 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증빙서류
2. 보조금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증빙서류

☑ 구매자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요청하는 경우

1. 전체 보일러 가격에 대한 계약이행 증빙서류

[제4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0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1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거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 보일러 구매자

성명 : (서명)

○ 보일러 공급자

상호 :

성명 : (서명)

거창군 공고 제2021-27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2020. 12. 29. ~ 2021. 1. 5.까지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1. 1. 6.

거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 1. 5.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비 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정대은	2020. 12. 28.	110명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창군공무직지회

□ 이의신청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 군 행정과(서무담당)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 - 28호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상림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거 창 군 수

□ 매입대상지 선정 기준

①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창읍 중앙·상림·대동리 등 2층 이하 저층 주택 및 나대지

②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한지 30년 (사용승인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④ 대지면적이 100㎡이상 500㎡미만이어야 한다.

⑤ 대지경계 등 부동산 물권권리에 하자가 있는 필지는 제외한다.

⑥ 기타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매입필지 가점 적용 기준

① 나대지나 폐가는 가점 적용한다(단, 건축 경과년도와 무관함)

② 면적(인접필지와 병행 신청할 경우 합필면적)이 크거나 공지 인접필지는 가점 적용하며, 기타 지역적인 균형배치 및 인근의 공영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잔존가치가 적은 건축물 등)에 따라 가점 적용한다.

④ 기타 현장조건(경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한다.

□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계약 방법

❍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계약한다.

❍ 매입필지 선정 시 매입계획 필지보다 약30%를 추가 선정하여 예비 매입필지로 지정 후 매매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점수 순으로 이를 대체하여 계약한다.

□ 기타사항

❍ 매매대상은 소재지상의 모든 물권을 포함한다.

❍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 등기상 권리하자가 없어야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명도(거주자 퇴거 포함) 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로 문의(전화 940-338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21. 1. 6. ~ 2021. 2. 26.(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3층)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직접 신분증 지참 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

○ 건물(나대지)사진(별지2)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이력 포함)

【별지 1】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신청서

<table>
<tr><td>① 접수번호</td><td></td><td>② 접수 일자</td><td></td><td>③ 건 물 주 거주여부</td><td>(거주, 비거주)</td></tr>
<tr><td>④ 물건소재지</td><td colspan="3"></td><td>⑤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td><td></td></tr>
<tr><td rowspan="3">⑥ 토지소유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⑦ 도로폭</td><td colspan="2">m</td><td>⑧ 구 조</td><td colspan="2">철근콘크리트 ( )
벽돌 ( )
시멘트블럭 ( )
기타:</td></tr>
<tr><td>⑨ 대지면적</td><td colspan="2">㎡</td><td>⑩ 건물연면적</td><td colspan="2">㎡(지상 층/지하 층)</td></tr>
<tr><td>⑪ 건물사용 승 인 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⑫ 임대가구수</td><td colspan="2">가구</td></tr>
<tr><td>* 첨부서류</td><td colspan="5">○ 건물(나대지)사진(별지2에 전경.근경 부착)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td></tr>
<tr><td colspan="6">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거창군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본 부지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2021년 월 일</td></tr>
<tr><td>신청인 (소유자)</td><td>성 명</td><td colspan="4">(인)</td></tr>
<tr><td rowspan="3">신청인 (대리인 신청시)</td><td>성 명</td><td>(인)</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소유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수 귀하</td></tr>
</table>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신청 위임장

○ 물건 소재지 :
○ 대 지 면 적 : ㎡
○ 주 택 유 형 :
○ 건축 연면적 : ㎡(지상 층/지하 층)
○ 소유자 성명 :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단독주택지(나대지)의 매입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1. .

붙 임 : 토지(건물) 소유자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수임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2】

건물(나대지) 사진

전 경(주변 건물보이게)
근 경

거창군 공고 제2021 - 31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에 따른 행정예고

거창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1. 1. 6.

거 창 군 수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상면 도동경로당 등 5개소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2.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 6. ~ 2021. 1. 26.(21일간)

4. 지정위치 : 붙임1 위치도 참조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거창군 경제교통과(교통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1. 6. ~ 2021. 1. 26.(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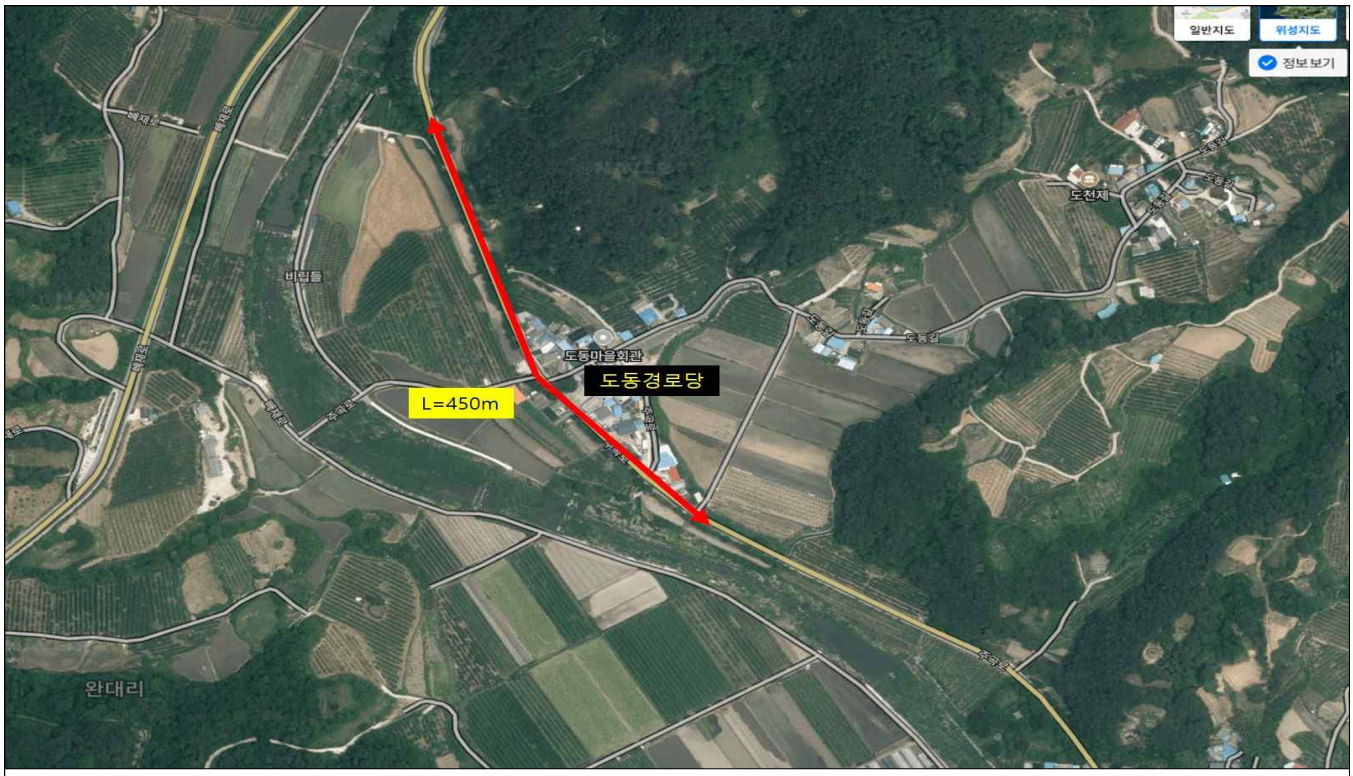

주상면 완대리 산 38 ~ 주상면 주곡로 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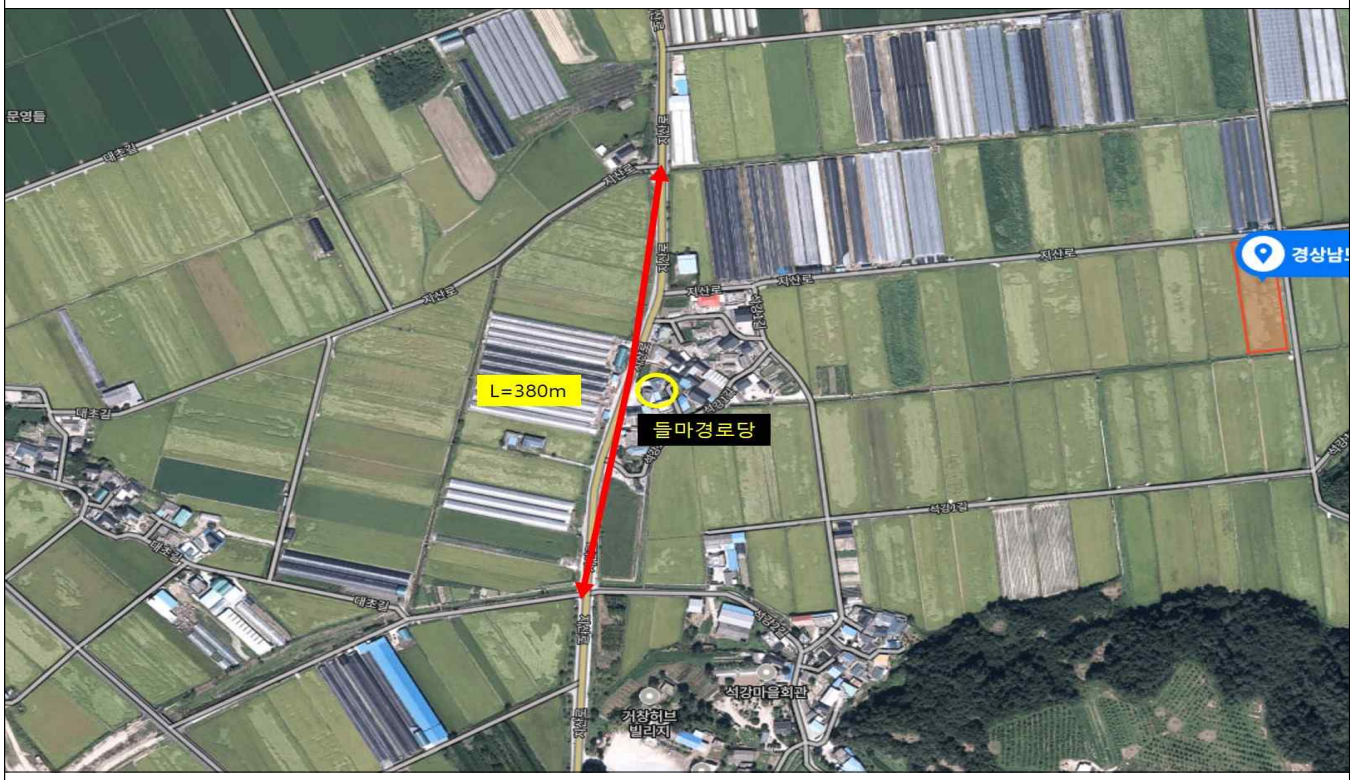

가조면 지산로 1295-6 앞 삼거리 ~ 석강·대초마을 입구

하성보건진료소 삼거리 ~ 한기·오산마을 입구

웅양로 1421-1 ~ 웅양주유소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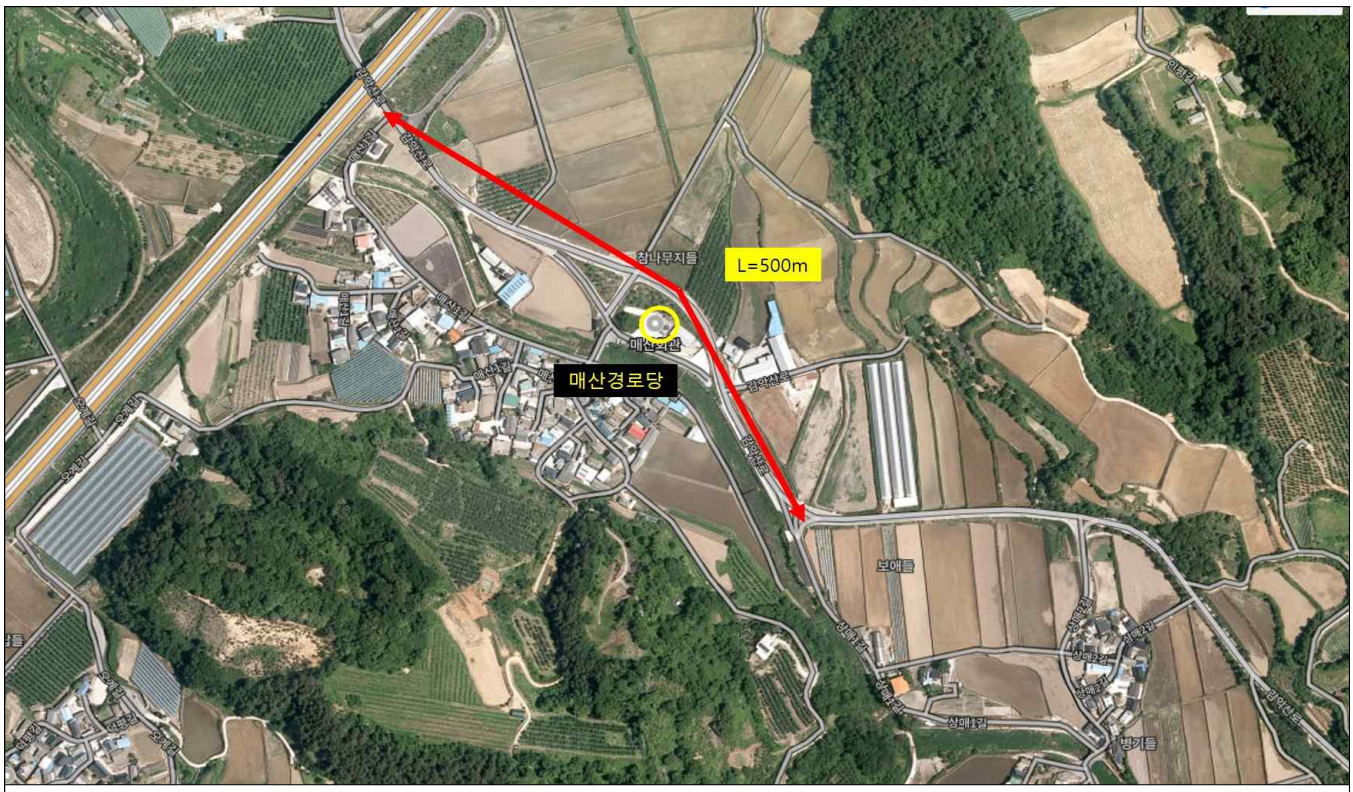

매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 상매산마을 진입로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1. 행 정 예 고 내 용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거창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